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1. 9. 2 선고 2020가합6014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주식회사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

담당변호사 김형근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1. 8. 19.

판결 선고2021. 9. 2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5억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. 11. 11.부터 2021. 4. 1.까지는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들 사이에 [별지 1]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. 1. 3. 체결된 매매계약을 571,246,575원1)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571,246,575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[별지 2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 판결)

재판장판사한정석

판사김현희

판사강석규

별지

1) 5억 5,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20. 11. 11.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. 8. 19.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